

영등포구의회  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83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제4호)

-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 ➡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-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 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 ➡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➡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보육시설 ➡ 어린이집
- 식재료관련 용어 정비

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 
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 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